

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관리번호	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3일
신고 기관	법인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		
	주소	전화번호		

신고내용

■ 의료기기 기관·단체 요건(「의료기기법 시행령」 제10조의5제1항)

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·수리업자·판매업자·임대업자를 사원 또는 조합원 등 구성원으로 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	여 []	부 []
--	----------	----------

■ 소비자단체 요건(「의료기기법 시행령」 제10조의5제2항)

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단체 여부	단체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기기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		
여 []	부 []	여 []	부 []

■ [공통] 조직 기준(「의료기기법 시행령」 제10조의5제3항)

전산장비 구비 여부		사무실 구비 여부		전담부서 명칭	상근인력 인원수
여 []	부 []	여 []	부 []		

「의료기기법」 제25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첨부서류	1. 공통 서류 가. 의료기기광고 심의 등에 관한 1개 이상 업무 처리 전담부서 및 3명 이상의 상근인력 현황 나. 전산장비 및 사무실 구비 현황 다. 정관 사본 2. 소비자단체 추가 제출서류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